

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방침

앤알캐피탈대부(주)(이하, "회사"라 함)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방침을 통해 회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,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.

제정(2014.02.28 시행)

제 1 조 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)

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 조 제 1 항 및 제 4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합니다.

-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
-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및 증거확보
- 사무실 출입자 확인

제 2 조 (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)

회사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합니다.

| 설치 위치 | 촬영 범위 | 설치 대수 |
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
| 본점 계약서관리실 9F | 문서고 내부 | 1 대 |

합계 : 1 대(2014 년 02 월 현재)

제 3 조 (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)

회사는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,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으며,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.

| 구분 | 소속 | 담당자 | 연락처 |
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---------|
| 관리책임자 | 경영지원팀 | 박성준 | 02-2039-6486 |
| 본점관리자 및 접근권한자 | 경영지원팀 | 이성원 | 02-2039-6483 |

제 4 조 (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)

회사에서 설치·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시간, 영상정보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| 촬영시간 | 촬영대상 | 보관기간 | 보관장소 |
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
| |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|
| 24 시간 연속 촬영 | 계약서관리실 문서고 내부 | 90 일 | 계약서관리실 안 DVR 장비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|

- 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 3 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, 녹화 기능이 있는 문서고 내부 CCTV 정보는 90 일간 보관 후 자동으로 삭제됩니다.

● 제 5 조 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)

회사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,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| 수탁업체 | 수탁업무 | 담당자 | 연락처 |
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|-----------|
| (주)에이디티 캡스 | CCTV 모니터링 | 강석규 | 1588-6400 |

● 제 6 조 (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)

회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 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·재생되는 장소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며, 제 3 조 및 제 5 조에 따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·재생 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. 단, 열람·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영상정보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영상정보관리책임자가 지정한 자의 참관 하에 열람·재생이 가능합니다.

● 제 7 조 (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)

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는 다음 각 항과 같습니다.

-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을 회사 정보보호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로 제한 한다.
- ② 정보주체의 열람 및 존재확인을 요구할 때 회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, 이 때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한 정보주체는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아래 각 호의 경우 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, 10 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1.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 3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● 제 8 조 (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)

회사는 다음 각 항과 같은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,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- ① 영상정보처리기에 의하여 수집·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.
- ② 영상정보처리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개인영상정보가 열람·재생되는 장소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 및 열람·재생을 통제하여야 한다.
- ③ 회사는 전보, 퇴직 등 인사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.
- ④ 회사는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영상정보파일을 송·수신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신·도난·누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비밀번호 설정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⑤ 회사는 개인영상정보의 위·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- ⑥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각각의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가장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며, 부착위치에 따라 적정 규격의 안내판을 설치한다.

■ 제 9 조 (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)

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방침은 2014년 02월 28일에 제정 및 시행되었으며 법령·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·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
■ 부칙

(시행일) 이 지침은 2015년 05월 01일부터 제정 및 시행한다.